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정동영 (통일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1년 주기의 시행계획을 신설하며,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2026.3.12.)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통일교육 지원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기본계획 외에 시행계획을 추가하고,

나. 기본계획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하며,

다. 국민의 알 권리를 널리 보장하는 차원에서 통일부장관이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타,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간행물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통일교육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u>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u> <u>“기본계획”이라 한다)</u> 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u><신 설></u>	제3조의2(통일교육기본계획) ① - ----- ----- <u>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u> <u>“기본계획”이라 한다)</u> 및 시행 <u>계획</u> ----- -----. ②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u>1.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이</u> <u>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시</u> <u>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변경하는</u> <u>경우</u> <u>2.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u> <u>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u> <u>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u> <u>변경하는 경우</u> <u>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u> <u>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u> <u>정하는 경우</u>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

계획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
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간행물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
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일부 교육총괄과	
연 락 처	(02) 901 - 7011